

**교사 자격 기준**(제21조제2항 관련)

| 자격<br>학교별 | 정교사(1급)   |
|-----------|---|
| 중 등 학 교   | 1. 중등학교의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<br>2.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<br>3. 중등학교의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<br>4. 교육대학·전문대학의 교수·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|
| 초 등 학 교   | 1. 초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<br>2. 초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,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<br>3. 초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|
| 특 수 학 교   | 1. 특수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<br>2. 특수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br>3. 유치원·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(1급)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<br>4. 유치원·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|
| 자 격       | 정교사(2급)   |

|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학교별     |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중 등 학 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</li> <li>2.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li> <li>3.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</li> <li>4.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</li> <li>5. 대학·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(敎職科) 학점을 취득한 사람</li> <li>6.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</li> <li>7.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</li> <li>8. 교육대학·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9.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(명예교사는 제외한다)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.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li> </ol>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초 등 학 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</li> <li>2.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</li> <li>3.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li> <li>4.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</li> <li>5.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</li> <li>6.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</li> <li>7.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</li> </ol>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특 수 학 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</li> <li>2. 대학·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</li> <li>3. 대학·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li> <li>4. 유치원·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</li> <li>5. 유치원·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li> <li>6.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</li> <li>7. 유치원·초등학교·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li> </ol>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자 격     | 준 교 사   | 전문상담교사(1급) | 전문상담교사(2급) |

| 학교별     |   |  |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|
|---------|---|--|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|
| 중 등 학 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(전문대학은 제외한다)의 공업·수산·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</li> <li>2.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</li> <li>3.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·산업대학·기술대학(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)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</li> </ol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(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)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</li> <li>2. 전문상담교사(2급)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</li> </ol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학·산업대학의 상담·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한 사람</li> <li>2.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·심리 교육과정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</li> <li>3.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(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)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</li> </ol>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|
| 초 등 학 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</li> <li>2.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</li> <li>3.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</li> </ol>  |  |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|
| 특 수 학 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</li> <li>2.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</li> </ol>  |  |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|
| 자격      | 사서교사  | 사서교사   | 실기교사   | 보건교사 | 보건교사 | 영양교사 | 영양교사 |  |

| 학교별                  | (1급)  | (2급)  |  | (1급)   | (2급)  | (1급)  | (2급)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|---|---|--|
| 중등학교<br>초등학교<br>특수학교 | <p>1. 사서교사 (2급)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</p> <p>2. 사서교사 (2급)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사서교육 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</p> | <p>1. 대학·산업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 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 과정을 마친 사람</p> <p>2.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사람</p> <p>3.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</p> <p>4.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 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</p> | <p>1. 전문대학(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이란(欄)에 서 같다)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(實科系)의 기능을 마친 사람,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</p> <p>2. 대학(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),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, 체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</p> <p>3.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</p> <p>4. 실업과,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</p> <p>5.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0조제2항</p> | <p>보건교사 (2급)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</p> | <p>1. 대학·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점수를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</p> <p>2.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점수를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</p> | <p>영양교사 (2급)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</p> | <p>1. 대학·산업 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점수를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</p> <p>2.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</p> |

|  |  |  |  |  |  |  |
|--|--|--|--|--|--|--|
|  |  |  | <p>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(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(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)로서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 |  |  |  |
|--|--|--|--|--|--|--|

|  |  |  |  |  |  |  |
|--|--|--|--|--|--|--|
| <p>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표 중 초등학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, 중등학교는 중학교·고등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.</li> <li>2. 교장·교감·교육장·장학관·장학사·교육연구원·교육연구사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원장·원감의 경력연수(年數)는 교육경력연수(年數)로 볼 수 있다.</li> <li>3.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중전의 초급대학·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된다.</li> <li>4.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다만,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li> </ol> |  |  |  |  |  |  |
|--|--|--|--|--|--|--|